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5128616(본소), 2022가단5128623(반소) 판결
[도급대금 청구의 소 ·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영업손실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고정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진웅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7.부터 2023. 1.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1. 5. 16.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요청하는 ‘C’ 4대 및 가입자용 앱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버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제조, 공급을 계약금액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의 50%는 계약 당일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나머지 50%는 검수 완료 후 즉시 지급), 계약기간 2021. 5. 16.부터 2021. 7. 5.까지로 하되, 원고가 2021. 7. 5. 이후 피고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자체테스트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검수요청하기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의 50%인 2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검수리스트 초안을 전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1. 7. 2. 검수리스트 항목에 대해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19. 피고에게 완성된 이 사건 제품 4대를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였는데, 검수결과 1대에서 LED 불량, 다른 1대에서 와이파이 접속 불량 현상이 나타나 이를 회수하였다.

피고는 2021. 7. 21. 원고에게 위 검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요청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21. 7. 29. 원고로부터 수리된 이 사건 제품 2대를 인수하고 재차 검수를 진행하였고, 2021. 8. 2. 원고에게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기본 기능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서 다시 수정요청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검수리스트에 따라 검사하면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21.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피고의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 4대를 회수하였다.

사.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수량을 최고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 9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검수리스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완성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검사 불합격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대금 27,000,000원(= 잔금 22,500,000원 + 부가가치세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품 수량 최고일 다음 날인 2021. 11.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 특수조건’상의 자체테스트와 시범서비스에 대한 일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45,000,000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고의 2021. 9. 6. 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민법 제548조 제1항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대금 22,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③ 피고가 다른 회사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1대당 8,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이행지체로 인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이

파기되어 이 사건 제품 4대에 해당하는 32,000,000원(= 8,000,000원 × 4대)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③ 합계 99,500,000원(= 45,000,000원 + 22,500,000원 +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검수리스트에 정한 내용대로 완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품의 주요구조 부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품 제작이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품은 서비스제공자가 특정 실내(장소)에 설치하는 ‘C’(D)와 가입자용 앱(안드로이드 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열차, 버스, 여객선, 지하철 등 인터넷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C’를 설치하면 개별 가입자가 스마트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최신의 고화질 영상미디어 콘텐츠(이하

‘영상물’이라 한다)를 와이파이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는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세부사항 및 기능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고 명시하였고, 위 ‘계약 특수조건’에는 이 사건 제품 중 ‘C’의 기능란의 ‘가입자 동시접속자 수 30명 이상’ 항목 및 ‘가입자 동시접속자 수 100명’ 항목에 ‘△’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 옆의 비고란에 하드웨어 검증 후 2021년 6월초 1차 시범서비스 및 2021년 7월초 2차 시범서비스 실시 여부를 확정할 것임을 기재되어 있다.

③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21. 7. 2. 합의한 이 사건 제품 검수리스트의 1. 1. 2. 6. 항목에는 기본 CMS 기능 제공 확인‘이, 1. 1. 3. 3. 항목에는 ‘동시접속자 30명 이상 확인(무선 및 주위 환경에 따라 다름)’이 명시되어 있다. 위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기능이란 서비스제공자가 앱에 등록할 영상물의 노출할 위치나 카테고리, 노출 기간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이를 통하여 가입자의 앱에 영상물이 노출 및 재생될 수 있다.

④ 그러나 원고에 제작하여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기본화면의 ‘Latest Contents’란에 노출된 영상물만 재생되고, 기본화면의 ‘콘텐츠전용관’에만 등록된 영상물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 즉, 기본화면에 ‘Latest Contents’란과 ‘콘텐츠전용관’이 함께 존재하는데도 ‘Latest Contents’란에 등록 및 노출된 아이콘을 통해서만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어, 기본화면에 제공되는 아이콘 중 일부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에 관한 피고의 수정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거나 기술적 문제가 없다거나 개선할 사항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⑤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동시접속자 수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검수리스트에 기재된 검수조건에 비해 현저히 모자라고 다수의 가입자가 영상물을 시청하는 이 사건 제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최대 8명에 불과하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45,000,000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1) 관련 법리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을 계약내용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자체테스트 및 시범서비스에 대한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인 45,000,000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계약금액 상당은 당사자 사이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볼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제품이 약정한 대로 제작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제작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손해배상예정액 45,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30%에 해당하는 13,500,000원(= 45,000,000원×30%)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3)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지급 대금 22,500,000원 반환청구

피고는 2021. 9. 6. 자 통지(갑 제4호증)에 따라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청구를 하는데, 민법 제548조 제1항이 규정한 원상회복청구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한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으로 선행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2021. 9. 6. 자 통지서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납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중단돼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략) 원고의 계약 이행 지연으로 피고는 납품계약 취소 등을 포함하여 사업적으로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 상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영업손실 32,000,000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6. 30.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1대당 8,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2021. 9. 5. 피고에게 피고의 공급의무 미이행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을 파기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393조 제2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지

별지